

하수도설계기준

[시행 2025. 1. 21.] [환경부고시 제2025-14호, 2025. 1. 21., 일부개정.]

환경부(생활하수과), 044-201-7023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계기준)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17-194호,2017.10.27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8-251호,2018.12.31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9-68호,2019.4.10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19-207호,2019.11.19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2-21호, 2022. 1. 20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2-270호, 2022. 12. 28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5-14호, 2025. 1. 21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